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3 선고 2020가합607018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22. 7. 20 선고 2021나2045436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3 선고 2020가합607018 판결

전문

원 고 채무자 주식회사 A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자연수

담당변호사 양희근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남은지

변론종결 2021. 10. 6.

판결선고 2021. 11. 3.

주문

1. 피고와 C 주식회사 사이에 2018. 7. 31. 체결된 5억 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피고는 원고에게 5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는 2009. 7. 6. D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주식회사 A(이하 'A')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대출을 받았다. A은 2013. 4. 30. 파산선고를 받았으며, 원고는 파산채무자 A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순번	대출과목	대출일	대출기간	대출액	이자율 (지연이율)	근보증한도액	
						E F	G
1	일반대출	2009.7.6.	2016.6.6	420억	연11% (연25%)	546억	631억
2	종합통장 대출	2009.7.6.	2016.6.6	100억	연11% (연25%)	130억	
합계				520억		676억	631억

나. 이후 소외 회사가 대출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위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소외 회사와 그 연대보증인 E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201999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1. 8. 13. '소외 회사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8,789,851,08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E의 배우자이다. 소외 회사는 2018. 7. 31. 피고에게 5억 원을 계좌입금하는 방법으로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소외 회사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제1의 다.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에게 5억 원을 증여하였는바, 위 각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위 5억 원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피보전채권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5억 원을 송금할 당시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하여 수백억 원 상당의 대출원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피고는 위 피보전채권이 소외 회사의 상계 의사표시로 인해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소외 회사가 5억 원을 피고에게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송금액이 다액인 점, 피고는 자신이 소외 회사에 6억 원을 무이자로 대여하였다가 그 중 일부를 변제받은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대여 및 변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5억 원은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증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소외 회사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피고가 소외 회사의

무자력에 관하여 다투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소외 회사는 당시 원고에 대한 채무를 제때에 변제하지 못하여 다른 곳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등 자금부족에 시달렸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외 회사는 위 5억 원의 지급 당시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에 있던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5억 원을 증여한 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되는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나아가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던 소외 회사가 위 5억 원을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의 부족이 심화되어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하게 되리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소외 회사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며, 채무자인 소외 회사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3)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5억 원에 관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5억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나,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가액배상의 지급의무는 그 전제가 되는 사해행위취소라는 형성판결이 확정될 때 비로소 발생하므로, 5%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종민, 판사 인형준, 판사 황해철